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용어의 의미해석 혼선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함.

나. 사회의 다변화와 시민의 환경권 욕구 증가로 새로운 환경관련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용어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지며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의미로 해석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이 필요함.

다. 공공하수도 광역화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도적 대응과 인천환경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재산의 가치 보존 증대, 미래지향적 책임경영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 설립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와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설립”과 “환경관련시설”로 변경함.(제1조 변경)

나. 인천환경공단 사업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환경관련시설 관리·운영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관련사업을 추가함.(안 제17조 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립하여 환경관련시설”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하여 제9호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환경관련시설 관리·운영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관련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만, 제1항 제7호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환경공단을 <u>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설립</u> <u>하여 환경관련시설</u> ----- ----- ----- -----.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7조(사업)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환경관련시설 관리·운영사업</u>
<u><신 설></u>	7.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관련사업</u>
6. (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제1호부터 <u>제6호까지에</u>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u>제8호까지에</u>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u><신 설></u>	<u>②다만, 제1항 제7호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2조(적용범위) ○ 제49조(설립) ○ 제56조(정관) ○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제76조(설립·운영) ○ 제77조(비용 부담)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

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의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전 용 철 의원